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 국회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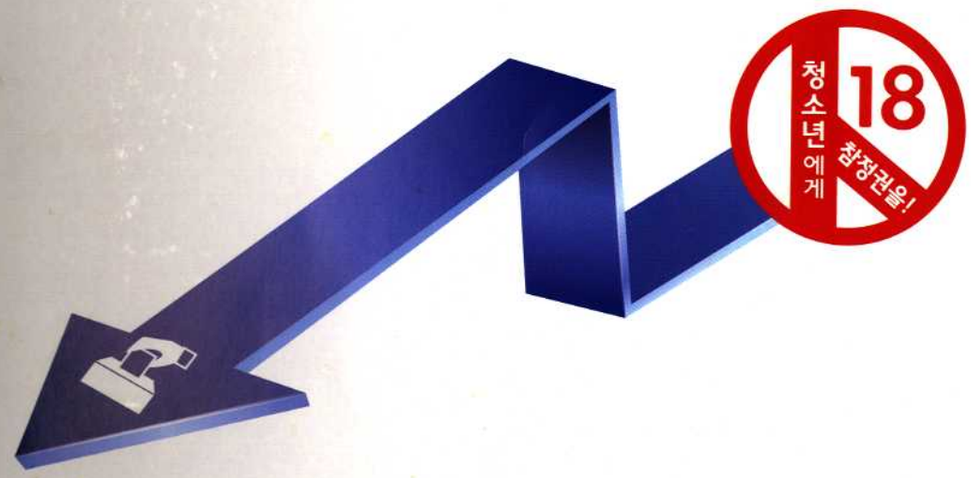

2016년 10월 29일(토)
오후2시~5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이학영, 권미혁, 한국YMCA전국연맹
국회아동 · 여성인권정책포럼
주관 : 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후원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02-754-7893

▌글 싣는 순서

□ 인사말 3P

□ 환영사 5P

□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 국회토론회> 진행일정 7P

□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관한 청소년 의식 설문조사 결과 9P

□ 발제문

⑴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배경 및 설명 17P

⑵ 외국 참여 사례를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의 권리 31P

⑶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 39P

□ 토론문

⑴ 시민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18세 참정권 43P

⑵ 피선거권과 정당참여의 관점에서 바라본 18세 참정권 57P

⑶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18세 참정권 59P

□ 부록

⑴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관한 청소년 의식 설문조사 설문지 61P

⑵ 지역 청소년YMCA 18세 참정권 입장문 65P

인 사 말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사회에서 생명과 평화를 실천하는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입니다. 먼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YMCA는 2005년부터 '만18세 참정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교육감선거 참여 운동 및 정책제안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청소년YMCA는 청소년 당사자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통해 '만18세 참정권'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만18세 참정권'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기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만18세 참정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에는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투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청소년들의 소중한 한표의 권리가 성숙한 민주주의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만18세 참정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8세 참정권 실현 청소년 국회토론회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펼쳐주세요.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16. 10. 29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환 영 사

청소년YMCA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청소년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계획하고 2005년부터 진행한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낭랑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운동의 성과로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국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국YMCA는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배재학당 학생YMCA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암울했던 시대에 민족의 독립과 개화를 돕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던 것이 학생YMCA였습니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여전히 암울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노래하지 못하는 시대, 승자독식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싸움만이 존재하는 시대, 청년들을 불안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암울했던 그 시대에 희망과 꿈을 밝혔던 학생YMCA처럼 청소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청소년YMCA회원과 청소년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명 한명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희망을 마음껏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 국회토론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희망과 변화를 위한 실천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화와 희망을 힘껏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YMCA는 10대가 행복한 세상, 청년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YMCA 회원여러분은 물론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생명력 넘치는 '청소년 시민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29일

한국YMCA전국연맹 이 사 장 황 진
사무총장 이충재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 국회토론회 진행일정

■사회 : 최세량(영남권역청소년YMCA연합회 회장)

일 정	내 용	비 고
○ 오후 1:30-2:00	접수 및 등록	
○ 오후 2:00-2:25	■ 개회 및 인사말 - 인사말 : 이윤지(서부권역청소년YMCA연합회 회장) - 환영사 :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격려사 : 국회의원 박주민, 권미혁, 이학영	
○ 오후 2:25-2:35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관한 청소년 의식 설문조사 발표 : 이민선(성남청소년YMCA연합회 회장)	
○ 오후 2:35-3:20 (각 15분씩 총 45분)	■ 18세 참정권에 관한 <발제> - 주제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배경 및 설명 : 박주민(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제1. 외국 참여사례를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의 권리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발제2.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 : 엄유나(중부권역청소년YMCA연합회 회장)	
○ 오후 3:20-3:30	다과음료 및 휴식	
○ 오후 3:30-4:00 (각 10분씩 총 30분)	■ 18세 참정권에 관한 <토론> - 토론1. 시민권리의 관점에서 :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 팀장) - 토론2. 피선거권과 정당참여의 관점에서 : 배준호(정의당 부대표) - 토론3. 청소년당사자의 관점에서 : 허영란(부산청소년YMCA연합회 회장	
○ 오후 4:00-4:20	■ 18세 참정권에 관한 참여자 종합토론	
○ 오후 4:20-4:40	■ <18세 참정권> 참여자 퍼포먼스	
○ 오후 4:40-5:00	■ 폐회 및 광고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관한 청소년 의식 설문조사 발표

올해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의견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전국의 청소년 1264명을 대상으로 선거연령 인하와 전반적인 정치참여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 조사개요

▷ 조사 기간 : 2016년 9월 26일 ~ 10월 14일 (약 3주간)
▷ 조사 방법 :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 조사 지역 : 거창, 구미, 군산, 김해, 나주, 대전, 마산, 부산, 서울, 수원, 안동, 안산, 여수, 원주, 이천, 진주, 천안, 춘천, 파주, 홍천 (총 20개 지역)

▷ 표본수 : 1,264명
▷ 분석 도구 : 엑셀
▷ 분석자 :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2. 조사결과 요약 : 설문조사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 현재 당신의 나이는 몇 살 입니까?

문항	빈도	백분율
14세	68명	5.4%
15세	2명	0.2%
16세	40명	3.2%
17세	532명	42.1%
18세	563명	44.5%
19세	59명	4.7%
총합계	1264명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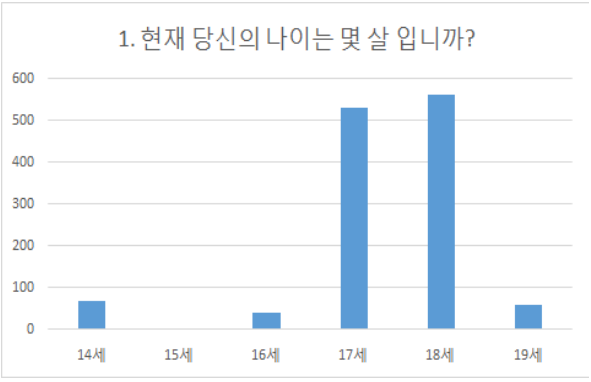

⑵ 선거연령 인하로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투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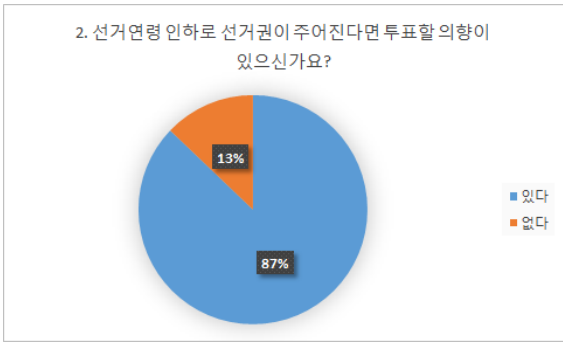

문항	빈도	백분율
있다	1098명	86.9%
없다	162명	12.8%
결측	4명	0.3%
합계	1264명	100.0%

⑶ 선거연령 인하가 이뤄진다면 몇 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 만약 99년 7월생이면 현재 생일이 지나서 만 17세입니다.)

	빈도	백분율
만 14세	32	2.5%
만 15세	26	2.1%
만 16세	130	10.3%
만 17세	298	23.6%
만 18세	502	39.7%
만 19세	276	21.8%
합계	12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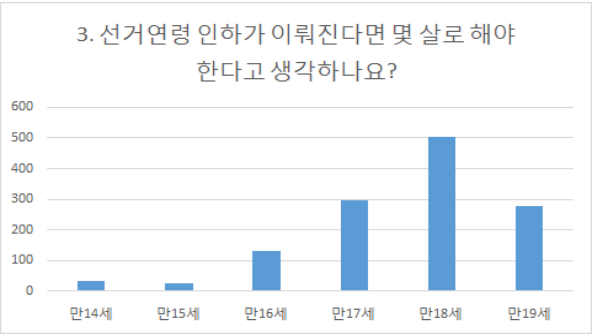

⑷ 당신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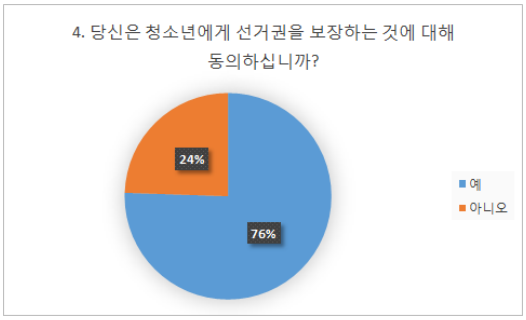

	빈도	백분율
예	951	75.2%
아니오	308	24.4%
결측	5	0.4%
총합계	1264	100.0%

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데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문항	빈도	백분율
①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637	34.7%
② 만 18세의 청소년은 군입대 가능, 경제활동 시 세금 납부, 결혼 가능, 운전 면허도 발급가능한데 선거권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320	17.4%
③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관련 정책(교육정책, 복지정책 등)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이다.	415	22.6%
④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 받는 이유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이다.	161	8.8%
⑤ 사회적인 문제인 정치적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305	16.6%
합계	1838	100.0%
결측	308	
총합계	2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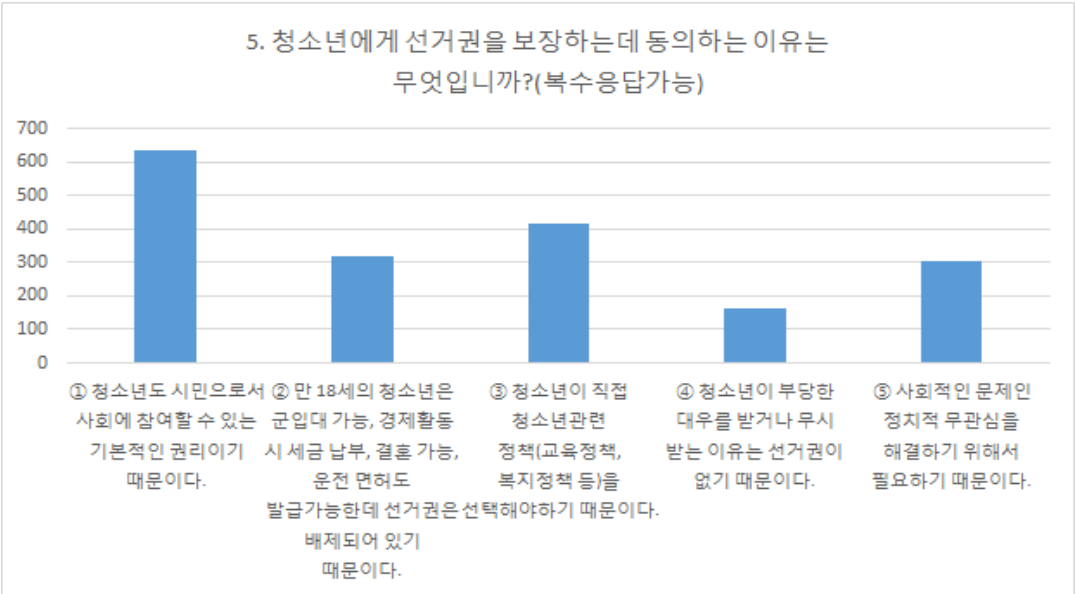

⑹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문항	빈도	백분율
① 청소년 대부분은 미성숙하여 아직은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71	45.6%
② 청소년은 정치보다는 학업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다.	12	3.2%
③ 아직 선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나 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97	25.9%
④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생겨도 많이 참가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27	7.2%
⑤ 청소년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8	18.1%
합계	375	100.0%
결측	943	
총합계	1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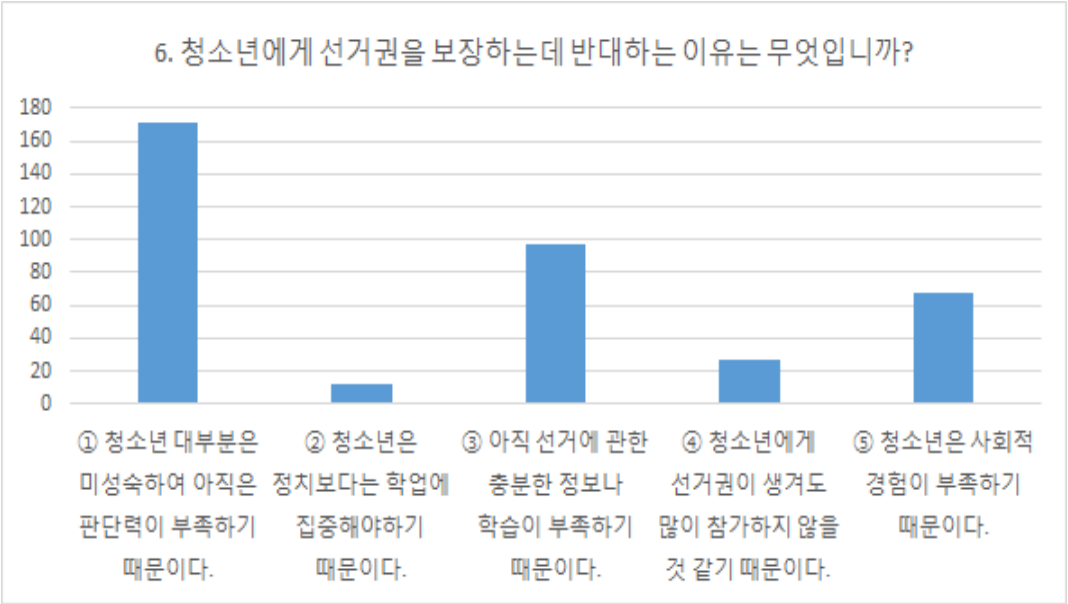

(7) 만약 당신에게 선거권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시겠습니까?(복수응답가능)

문항	빈도	백분율
① 정당	154	12.2%
② 입후보의 공약	791	62.6%
③ 입후보의 출신지역	20	1.6%
④ 입후보의 청소년 정책 유무여부	281	22.2%
결측	18	0.6%
총합계	12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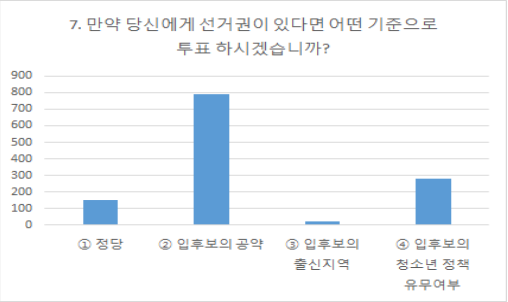

(8) 청소년이 선거에 관심 갖기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가능)

문항	빈도	백분율
①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대통령,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좋지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352	27.1%
②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더 급선무이다.	14	1.1%
③ 학교생활과 학업만으로도 내 삶은 벅차다	257	19.8%
④ 청소년이 참여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정치적 냉소주의)	172	13.2%
⑤ 선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432	33.2%
⑥ 나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73	5.6%
합계	1300	100.0%
결측	13	
총합계	1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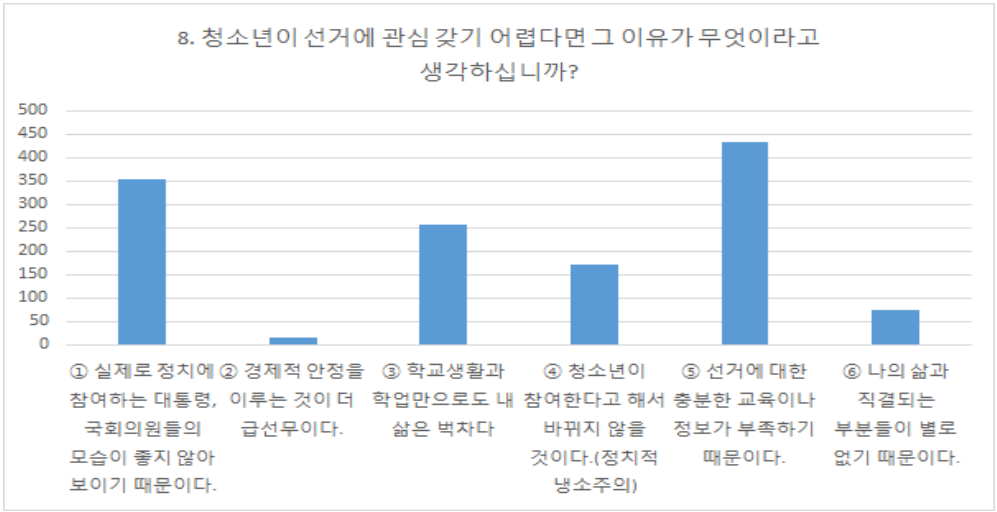

(9) 청소년에게 현재 제일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가능)

문항	빈도	백분율
① 입시제도 및 교육정책 변화	711	54.1%
②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인권문제 해결	117	8.9%
③ 청소년 복지정책(무상급식,학교밖청소년,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 증가	153	11.6%
④ 학교 내 학생자치권, 학생인권조례 보장	78	5.9%
⑤ 대학등록금 인하	249	18.9%
⑥ 기타	7	0.5%
합계	1315	100.0%
결측	12	
총합계	1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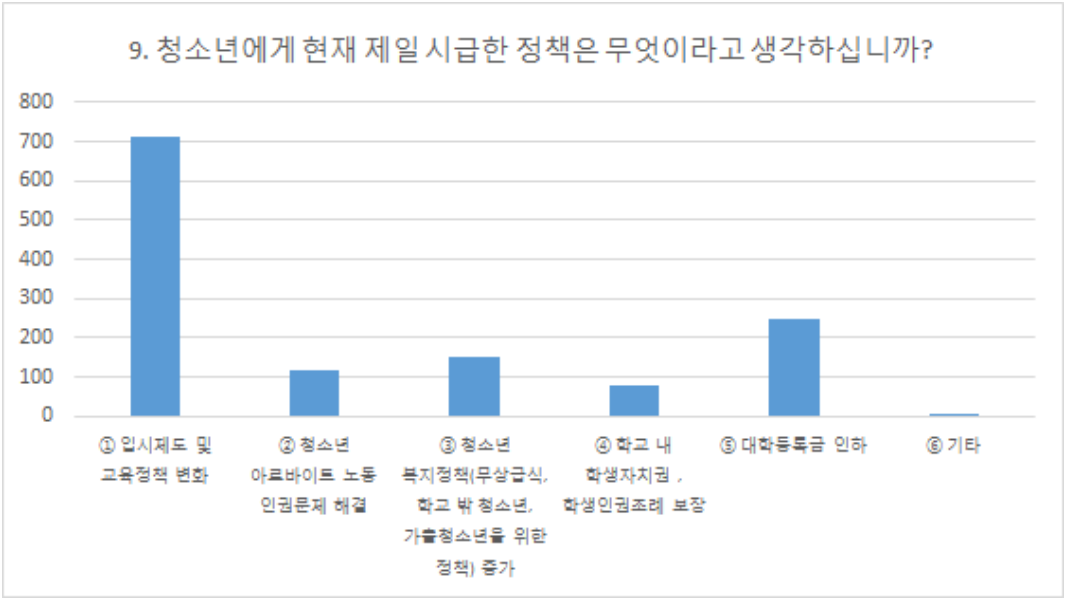

⑽ 만약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생긴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거라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가능)

문항	빈도	백분율
①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더욱 많이 생겨날 것이다	467	36.4%
②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과 미래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71	28.9%
③ 청소년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나 무관심이 사라져 정치에 관심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244	19.0%
④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바뀔 우려가 있을 것이다.	83	6.5%
⑤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사회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117	9.1%
합계	1282	100.0%
결측	10	
총합계	1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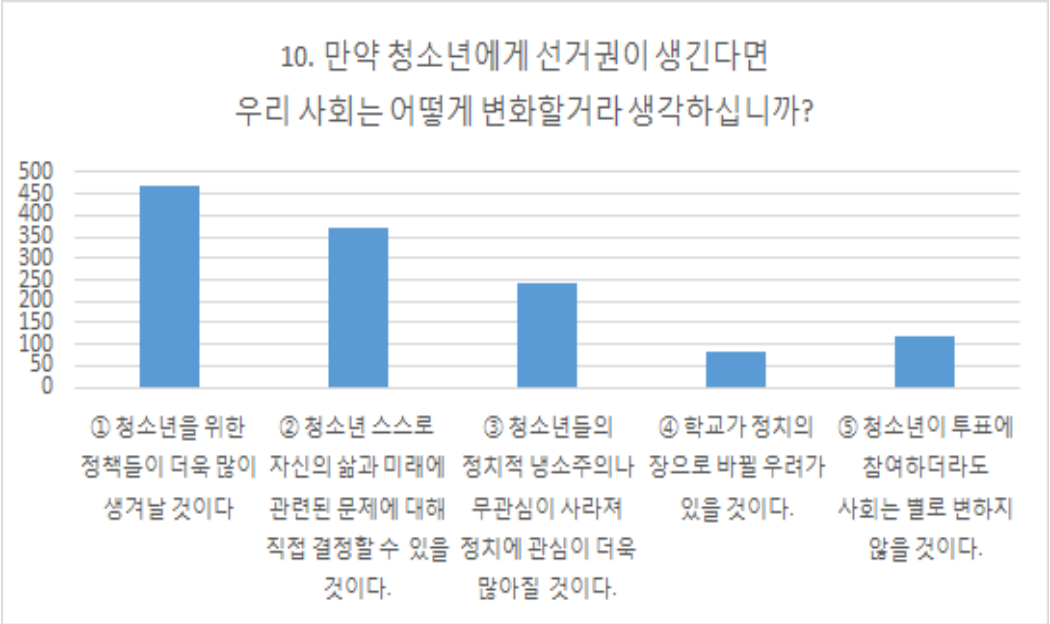

⑾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선거권이란 직접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만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문항	빈도	백분율
① 피선거권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	297	23.5%
② 피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	902	71.4%
③ 피선거권 현재 연령을 유지한다.	31	2.5%
합계	1230	100.0%
결측	34	
총합계	1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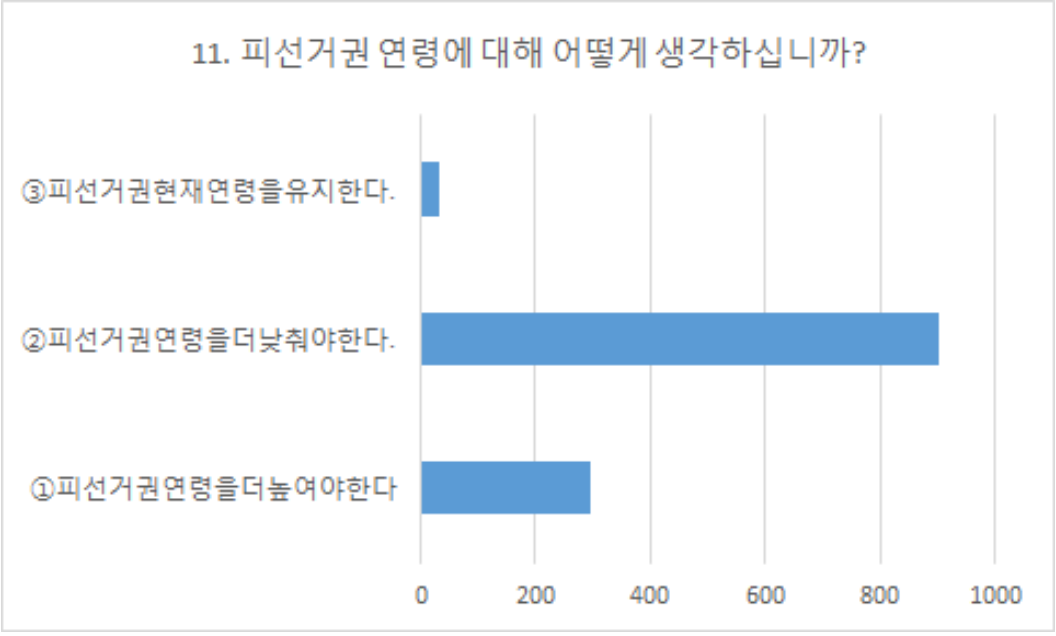

주제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배경 및 설명”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4

발의연월일 : 2016. 8. 4.
발 의 자 : 박주민・유은혜・김병관채이배・어기구・김해영제윤경・이재정・손혜원송옥주・이언주・오제세이철희・서영교・전혜숙 양승조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피선거권은 대통령은 40세 이상, 대통령 이외의 직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

법」 제8조, 18세 이상이면 8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807조,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등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음.

피선거권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피선거권의 부여를 유예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하여 선거에 관하여 참정권이 허용되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나.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의 자로 함(안 제60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25세”를 각각 “18세”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6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직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15조(선거권) ① 18세----------. -------18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② 18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피선거권) ① (생 략)	제16조(피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18세----------.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日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 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	③----------

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日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 18세----------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18세----------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2

발의연월일 : 2016. 8. 4.
발 의 자 : 박주민、김병관、어기구
김해영、제윤경、이재정
송옥주、이언주、오제세
이해찬、이철희、양승조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의 자격을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을 통해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연령도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따라서 정당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가능한 확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이에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인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법률 제 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를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공직선거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3

발의연월일 : 2016. 8. 4.
발 의 자 : 박주민、김병관、채이배
어기구、김해영、제윤경
이재정、송옥주、이언주
오제세、이해찬、이철희
전혜숙、양승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 당사자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임.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선거 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연령기준의 하향이 필요함.

이에,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49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선거권)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다.

② 16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9조제1항 전단 중 “제15조, 제17조부터”를 “제17조부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2(선거권)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다. ② 16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

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 ---------- ---------- ---------- ---------- ----------제17조부터-- ----------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발제 1

“외국 참여사례를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의 권리”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1. 들어가며

어떻게 보면, 청소년 선거권 연령을 놓고 이런 토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최소한 만18세 선거권연령을 규정해 놓고, 더 낮출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토론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만 19세를 선거권 연령으로 규정해 놓은 사례가 전세계에 없다. 그만큼 만19세라는 기준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기준이다.

선거라는 제도가 생긴 이후에 선거권을 둘러싼 갈등은 늘 존재해 왔다. 쟁점은 늘 ‘어디까지 선거권을 확대할 것인가’였다. 처음에는 부유한 남성에게만 인정되었던 선거권이, 노동자를 포함한 남성 시민들로 확장되고,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만21세 이상에게 인정되던 투표권이 이제는 만 18세 이상이면 인정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 되었다. 더 나아가 만 16세 투표권을 이미 현실로 만들었거나 사회적 논의에 붙이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19세 선거권연령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국가보다 앞서가지는 못할 지언정, 청년들을 정치적 무능력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해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 규정사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 정치참여의 측면에서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의견

대한민국의 선거권 연령은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헌시까지는 개별 선거법에 21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가 제3차 개헌 당시부터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에 20세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7년 헌법개정 당시에 선거권연령은 법률에 위임되었고, 2005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면서 선거권 연령을 만19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만19세라는 기준에 대해서

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입장을 수용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근거를 둔 헌법기관이다. 중앙선관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한 것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와 관련이 있다. 부정선거가 문제가 되었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선거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런 국가기관으로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체질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인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1인이 맡아 왔고, 선거관리위원들도 대체로 안정을 지향하는 성향의 인사들이 맡아 왔기 때문이다.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대폭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2015년 2월에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도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하한이 19세(다른 국가는 모두 18세 이하)이며, 세계 147개국의 선거연령도 18세"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중앙선관위가 보기에도 대한민국의 선거법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선거권 연령은 당연히 만 18세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중앙선관위도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그럴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립적인 헌법기관이며 선거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낸 의견을 국회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회는 선거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집단이다. 이런 집단이 선거법을 맘대로 주무르는 것은 위헌은 아닐지언정,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3. 외국의 선거권 연령 사례

이 논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다.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선거(교육감 선거)같은 경우에는 더 폭넓게 선거권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투표같은 경우에는 투표연령을 더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래의 논의는 최소한의 참정권에 관한 것이다.

이미 외국의 선거권 연령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이 논의가 되어 왔다. 아래의 <표1>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2015년에 발간한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이미 국내의 많은 자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소개된바 있다. 아래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18세 선거권 연령을 인정하고 있다.

만 18세라는 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엔 차원의 인권 관련 조약에서도 만18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CRC)'에서도 아동의 기준을 만18세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표1> 각국의 선거권 연령(세계 190개국 대상)

연령		국가명	비고
16세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쿠바, 브라질, 에콰도르, 소말리아	6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수단, 동티모르	4
18세	아시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홍콩,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몽골, 네팔,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일본, 필리핀	20
	중동	키프로스, 이집트,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예멘	7
	아프리카	알제리, 알골라, 베냉,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디오피아, 잠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잔지바르, 남수단	36
	유럽	벨기에, 불가리아, 알바니아, 안도라,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안도라, 몰도바,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39
	아메리카대륙	미국, 캐나다, 볼리비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연방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	31

		센트그라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오세아니아	호주, 아메리칸사모아, 키리바시,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이,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14
19세		대한민국	
20세		아르헨티나, 부루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콜롬비아, 기니, 요르단, 리히텐슈타인, 발리, 모로코, 나우루, 페루, 폴란드, 세네갈, 토고, 대만, 튀니지, 짐바브웨, 바레인	20
21세		싱가포르, 쿠웨이트, 통가, 사모아, 피지, 몰디브, 가봉, 파키스탄, 코트디부와르, 말레이시아, 레바논, 오만	12

-「각 국의 선거제도 비교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93쪽에서 인용

위의 <표1>에서 보듯이 대한민국만이 만19세라는 선거권연령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선거권연령을 조정할 경우에, 만20세에서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최근 선거권연령을 낮춘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정략적인 판단들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만19세를 합리화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는 선거권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미 만16세까지로 선거권연령을 낮춘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만16세로 선거권연령을 낮춘 바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이후에도 오스트리아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

<표2> 최근 선거연령 조정국가 현황

조정현황	해당국가
15세 ->18세	이란(2011)
19세 -> 18세 -> 16세	오스트리아(2007)
21세 -> 19세	한국(2005)
21세 -> 17세	수단
21세 ->18세	세네갈,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가봉, 키프로스, 시에라리온, 볼리비아, 레소토, 온두라스, 튀니지
20세 -> 18세	일본(2015)
18세 ->16세	아르헨티나(20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앞의 보고서, 94쪽

또한 현재 만 18세 선거권 연령을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만16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크다. 영국의 경우,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은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선거권연령을 만16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논의는 너무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이 만18세 선거권연령을 택하고 있는 국가의 청소년들에 비해 정치적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 여전히 만19세 연령을 고집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참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수치이다.
헌법재판소는 2013. 7. 25. 2012헌마174 결정을 통해 만19세 선거권연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은 선거권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 의견 중 일부를 아래에 붙인다. 읽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고, 상식적인 얘기이다.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조정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그 이전까지의 변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정치과정의 실질적 민주화 및 언론자유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졌고, 사회 조직이 다원화되고 수평화되면서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가 확립되었으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언론매체가 등장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와 사상의 교류가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경제수준이나 문화수준 역시 세계 선진국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국민은 정치·사회적 쟁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전반적인 정치적 의식수준을 크게 고양시켰는데, 그렇다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입법자가 보통선거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로 선거권 연령을 확정하였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다.

--------(생략)--------- 중등교육의 대상자인 청소년들 역시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조정된 때부터 지금까지 급속하게 향상되어 온 교육수준,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경제의 발전 및 문화수준의 향상,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특히 인터넷에 가장 친숙한 세대로서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갖추게 되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지식의 습득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사회의 문제점을 판단하며 이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배양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

로 중등교육을 마칠 연령의 국민이라면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은 일반적으로 18세 내지 19세이고, 18세부터 19세에 이르는 기간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진출을 시작하거나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기간인데, 고등학교 졸업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3학년들도 사회진출이나 대학입시 준비를 위하여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에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하게 된다.

그렇다면 보통선거의 원칙과 선거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국민에게는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이 마땅하다. ---------(생략)---------- 오늘날 세계 각국이 규정하는 선거연령을 살펴보아도 많은 수의 국가가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16세나 17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도 존재한다.

세계 각국은 정치·사회의 변화에 따라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2회의 조정을 통해 19세에서 16세로 선거권 연령을 조정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21세에서 3세 내지 4세를 낮추어 17세,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조정한 국가들도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변화에 따라 향상된 국민의 의식수준을 고려하여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경제·문화수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18세 국민이 다른 나라의 같은 연령에 비하여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마174 결정 소수의견 중에서)"

4. 청소년 정치참여의 권리

최근 청소년인권의 핵심은 참여권으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청소년을 '미래의 시민'으로 보고 권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참여를 보장한다든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청소년의 참여보장에 대해 소극적인 법률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에는 만19세가 되어야 정당가입을 할 수 있다고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다르다.

많은 나라들에서 10대 때부터 정당가입이 가능하며, 실제로 10대부터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얼마 전 스웨덴 최초로 27세에 장관(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담당 장관)이 된 사람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2년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그는 무슬림 출신이고 여성이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음주운전' 사실보다 관심을 끌었던 것은 27살 여성이 장관이 될 수 있는 스웨덴의 정치제도였다. 그래서 아이다 하드지알릭(Aida Hadzialic)이라는 이 여성에 대해 찾아보았다. 그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태어났고, 5살에 내전을 피해 스웨덴으로 이주한 이민자 출신이었다.

그녀는 16세에 스웨덴 사회민주당에 입당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 23살에 할름스타드(Halmstad)라는 도시의 부시장으로 일했다. 그리고 27살에 장관이 된 것이다.

현재 스웨덴이라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민주당-녹색당의 연립내각에는 1983년생 장관도 있다. 녹색당 소속의 구스타프 프리돌린(Gustav Fridolin)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1994년 11세의 나이에 스웨덴 녹색당에 입당했고, 녹색당 청년조직에서 활동하다 2002년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녹색당 공동대표가 되었고, 2014년 총선 후에 구성된 연립내각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0대부터 정당가입을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좋은 일이다. 스웨덴은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최상위권이 있는 국가이며, 부패도 없고 정부의 투명성도 높다.

청소년의 정당가입, 그리고 정치활동은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로서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선거권, 정당가입을 모두 만19세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봉쇄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후진적인 제도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피선거권 연령도 높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잘 되는 많은 국가들은 만18세부터 피선거권도 보장하고 있다.

<표3> 세계 각국의 의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요건

연령	국가명
18세	호주, 헝가리, 독일, 뉴질랜드, 중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프랑스(하원), 캐나다(하원),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20세	나우루
21세	싱가포르, 러시아, 룩셈부르크, 브라질(하원), 이스라엘, 폴란드, 멕시코(하원)
23세	튀니지, 카메룬
24세	프랑스(상원)
25세	한국, 일본(중의원), 태국, 미국(하원), 이탈리아(하원), 파키스탄(하원), 인도, 필리핀(하원), 멕시코(상원), 알제리, 카자흐스탄, 네팔, 터키
28세	가봉(하원)
30세	일본(참의원), 쿠웨이트, 미국(상원), 캐나다(상원), 파키스탄(상원)
35세	브라질(상원), 필리핀(상원)
40세	이탈리아(상원), 가봉(상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앞의 보고서, 112쪽

5. 글을 맺으며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은 헌법기관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세계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만18세 선거권은 평균수준에 맞추자는 요구에 불과하다.

굳이 만18세가 되면 병역법상 군복무가 가능하고, 취업도 당연히 가능하며 취업을 하면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만18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헌법재판소 소수의견).

따라서 국회에서는 정략적인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발제 2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

엄유나(중부권역청소년YMCA연합회 회장)

사회적으로 지위나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역사적으로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흑인에게 투표권이 없었고,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그들의 노력과 운동들을 통하여 현재는 그들에게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만 19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4대원칙은 자유, 비밀, 평등, 보통 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통 선거는 '선거인의 선거권 자격을 인종, 재산, 사회적 신분, 교육, 성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평등한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동시에 이와 같이 보증된 시민의 보편적 권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나이'의 제한으로 인해 선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청소년은 아직 사회적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하고, 미성숙하다는 기준이 선거에서 제외할 만큼 충분히 합리적인 기준일까요?*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헌시까지는 개별 선거법에 21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가 제3차 개헌 당시부터 유신헌법,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에 20세로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에 이르러 법률에 위임하였는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개별 선거법에서 20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1994년 3월 16일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될 당시에 선거권 연령에 관하여 18세로 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민법상의 성년연령인 20세로 합의하게 되었는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면서 당시의 시대적 변화, 즉 교육기회의 확대와 언론매체 등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19세에 달한 국민도 성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고,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2005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사회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통신매체

와 인터넷의 발전을 통하여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가장 친숙한 청소년은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은 일반적으로 18세 내지 19세이고, 18세부터 19세에 이르는 기간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진출을 시작하거나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기간인데 고등학교 졸업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3학년들도 사회진출이나 대학입시 준비를 위하여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에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하게 되는 시기를 거칩니다. 그렇다면 보통선거의 원칙과 선거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국민에게는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OECD 22개국 아동·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설문조사 결과(자료: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1위인 스페인은 118점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22위로 1위 국가와는 무려 36점 차이인 82점입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낮다고 수치로서 표현이 됨에도 여전히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나 법안들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건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우리들의 문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게 되고 이 쳇바퀴는 계속해서 굴러갈 것입니다.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아무리 청소년을 위한 법안이 주어져도 그 주체인 우리 청소년들이 채택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래도 정말 판단력과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또 반대로 그럴 수 있는 기회 조차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현재 18세 고등학생은 입시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정치적 무관심, 투표율 저조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고등학생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빼앗아가 정치적 무관심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며,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20대 총선 투표율은 58%로 (20대 0.3%, 30대 0.7%, 40대 16.7%, 50대 53.7%, 60대 27.0%, 70대 1.7%) 5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으며 2~30대 투표율은 1%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투표율의 저조함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들의 투표권도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18세 참정권'이 실현됨으로 인하여 성인 위주 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나 법안이 실행되어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점들과 현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입니다. 아직까지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공부는커녕 부정적인 것에 관심이 가득해 그렇게 된 것이라며 따가

운 눈총을 받아야만 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입시제도에 맞춰진 공부와 활동들을 해야 겨우 인정을 받으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억지로 맞추며 성장 아닌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청소년들만의 자기 결정권은 이대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와는 다르게 이젠 18세 참정권이 실현되어 후대의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참여와 자치로 건강한 민주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미래가 보이는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져 더는 행복지수가 낮고 청소년 개개인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고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배워나가며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청소년이기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첫걸음은 18세 참정권에 달려있습니다.

청소년을 무조건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해 주체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차별 받지 않고 존중 받는 지역사회의 구성원,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같이 나아가야 할 존재인 청소년에겐 참정권이 부여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고, 내년에 만 18세, 즉 18세 참정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우리들도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1

“18세 참정권, 시민으로서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권리”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장)

1. 청소년 참정권과 국제기준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가? 권리의 주체인가? 오늘날 아동.청소년의 모든 인권 문제는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춘다. 정답은 당연히 보호의 대상이며 권리의 주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고 교육을 받아야 할 미성숙한 통제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권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임과 동시에 무제한 잠재력을 가진 인권과 시민권의 주체로서 동등한 사회발전의 동반자다. 따라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아동.청소년에게 예외일 수 없다. 이는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인권기준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제11조는 평등권을, 제24조는 선거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1991년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1은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서는 아동.청소년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우리 정부에 대한 2011년 10월 권고(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견해의 존중과 관련하여, 법률 등에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며 아동견해 존중 위한 효과적인 조치, 아동견해 존중 정도,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에 끼친 영향의 정기적인 검토, 아동의 견해존중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2009년)를 고려할 것 등을 권고함(34~35항). 또한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우려하며 법률, 지침 및 교칙을 개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2.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제의 핵심이고, 선거권 연령기준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청소년의 의견표명권이나 정치적 참여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 2. 16.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당시 20세인 선거연령을 하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2013. 1. 17. 현행 선거법상 만19세 이상인자에게 부여되는 참정권을 하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정치적 판단능력 수준이 높아지고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이다. 선거권 연령은 합리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간주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연령 기준 설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능력에 대한 의문과 이들의 선권을 부정하는 논리로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의존성'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선거권 행사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와의 상호간 영향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성인도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있어 가족이나 동료, 대중매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그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고등학생을 정치에 참여케 하는 것은 학생의 정치화 문제나 대입준비 등을 고려할 때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곧 교육적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19세 미만자 모두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며, 선거 관련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학업에 지장을 줄만큼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19세 미만자 중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고등학생 신분을 고려한 교육적 부작용 주장이 일반적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더욱이 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할 때 위와 같은 우려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권 연령기준과 관련하여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은 다르더라도 다른 법률에 정한 연령기준과 취지를 참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병역법」 제8조는 제1국민역 편입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은 8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직 채용시험의 경우도 18세로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을 병역, 공무담임 등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19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만 독자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국제적 추세는 90% 이상이 선거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기준 232개 중 92.7% 정도(215개)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20세 이상)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2010년 국민투표권을 18세 이상자에게 부여하였고 이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도록 관련법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선거권 하한연령이 18세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를 16세로 하향하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이 추세다. 그 외에 지방선거는 일반 선거연령보다 더 낮게 하거나, 원하는 경우, 혼인시 또는 고용된 경우라면 16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한편 인권위는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과 함께,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예컨대,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현재는 이러한 사항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어떤 집단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이들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되어 온 사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정당가입이나 활동은 선거권과 성격이 다른 점에 비추어 정당가입 연령(19세 이상 국민)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붙임 2013. 1. 17. 결정문 전문)

<별첨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선거권 연령제한 규정은 연령에 의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2012. 4. 16.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바, 이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2012. 4. 2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다. 그러나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선거권 연령기준은 국민의 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 등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4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1, 제4조, 제6조2, 제1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5(2003년) 및 일반논평12(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2004. 2. 16.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선거권 등 연령기준 규정 및 검토의 방향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제67조 제1항)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제15조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제17조에서 연령산정기준을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법」 제5조는 19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지방자치법」 제15조는 19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15조를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에 따른 것이 보통선거의 원칙으로 이는 개인의 납세액이나 재산 등 경제적 사유나 정치적·사회적 신분, 성별,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보통선거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최소한의 제한으로 연령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의사표현은 투표제도를 통해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제

도 내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정하는 문제는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헌법 제24조에서는 선거권 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고, 따라서 보통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을 몇 세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그 나라의 역사, 전통과 문화, 국민의 의식수준, 교육적 요소,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자율성, 정치적 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다만, 그러한 입법권의 행사는, 선거권 연령의 규정에 따라 그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는 이상,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6. 26. 96헌마89 결정).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선거권 연령 등 관련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2. 정치적 판단능력에 대한 검토

선거권 연령은 선거권 행사에 요구되는 정치적 판단능력의 수준을 설정하고 일정 연령집단의 정치적 판단능력의 보편적 수준을 파악할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선거권 연령 확정의 기준이 되는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을 몇 세부터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국민의 의식수준과 교육수준,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의 정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추세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6. 26. 96헌마89 결정).

선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 능력이나 수준은 이를 객관화하기 어렵고, 청소년의 육체적 성숙도와 달리 정신적·문화적 성숙도를 연령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쉽고 빠르게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식과 의식수준이 높아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전통사회의 '성인'이나 '성숙'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선거권 연령의 기준을 삼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가능한 한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능력에 대한 의문과 이들의 선거권을 부정하는 논거로,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의존성'이 제기되기도 하

는데 선거권 행사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와의 상호간 영향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성인도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있어 가족이나 동료, 대중매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그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교육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 우려에 대한 검토

선거권 연령 하향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 일부를 정치에 참여케 하는 것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선거권 연령을 정함에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염려와 아울러 대입준비생의 진학문제를 고려한 우려일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18세는 713,978명, 17세는 708,614명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 4. 1. 기준 고등학교 3학년(총 1,920,087명) 중 18세는 42,591명, 17세는 635,644명, 16세는 650,217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1세 하향할 경우, 선거일에 따라 유동적이겠지만, 해당자를 최대한 포함하는 경우라도 위 통계상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 상당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곧 고등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행 선거권 하한연령인 19세 미만자 모두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학업에 지장을 줄만큼 많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관심이 높아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정치에 할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그 부작용을 예단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현행 선거권 하한연령 미만자 중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 주장은 일반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우려는 이러한 교육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다른 법률의 연령규정과의 관계

선거권 연령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은 다르더라도 다른 법률에 정한 연령기준과 그 취지를 참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병역법」 제8조는 제1국민역 편입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은 8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직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18세로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제65조), 이들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제70조)이나 갱내근로 금지(제72조) 등을 명시하고,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은 직업소개 제한 등의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혼인적령(18세), 운전면허(18세), 주민등록 발급(17세), 유언가능(17세) 연령 등의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을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현행 선거권 연령인 19세 이상자로 한정하여 독자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선거권 연령의 국제적 추세

선거연령의 각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2011년 기준으로 232국 중 92.7% 정도(215국)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20세 이상)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2010. 5. 시행된 「국민투표법」에서 18세 이상자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였고 이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도록 현재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선거권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였고(2013년부터 적용), 현행 선거권 하한연령이 18세인 미국, 유럽 등에서도 이를 16세로 하향하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시켜 가는 것이 추세이다.

한편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은 18세이지만 지방선거는 16세로 정한 뉴질랜드나 스위스, 일부 주(니더작센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브레만주 등)에서 지방선거 연령기준을 16세로 정한 독일 등과 같이 선거의 종류에 따라 연령기준을 달리 정하는 나라도 있다. 브라질이나 에콰도르와 같이 18세 이상은 의무투표이지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도 원하는 경우 투표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18세 이상 의무투표)이나 인도네시아(17세)처럼 혼인 시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하거나, 헤르체코비나(18세), 슬로베니아(18세)와 같이 고용된 경우면 16세부터 가능한 경우도 있다.

6. 주민투표권과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및 정당가입 연령기준 검토

현행법상 주민투표권 및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되고 있는데, 이 또한 전술한 이유들로 하향조정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여(19세 이상), 현행법 하에서는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어떤 집단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이들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되어 온 사실을 고려할 때, 교육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다. 그런데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정당가입 개방에 대한 제한은 당원의 자격에 대한 정당 내부의 교육이나 통제 시스템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국민의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는 더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선거권 등 관련 연령기준 설정의 방향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의 연혁을 보면,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헌시까지는 「대통령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서 21세 이상으로, 1960. 6. 15. 제3차 개헌당시부터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에 20세로 규정되었다가, 1987. 10. 29. 제6공화국 헌법인 현행헌법이 이를 법률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선거법에서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었으며, 2005. 8. 4. 「공직선거법」개정에 의해 19세로 낮춰진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7.6.26. 96헌마89결정).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언론매체나 정보기술의 발전 등의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능력과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입법부에서는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때 선거권 연령의 확정에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연령기준과 다른 나라의 선거권 연령에 관한 입법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선거권 연령에 관해서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경우에도,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정당가입이나 활동은 선거권과 성격이 다른 점에 비추어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2013. 1. 17.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별지]

세계의 선거연령 현황(2011년 기준)

선거연령	나라(country)	개수(%)
16세	오스트리아(2007년 도입), 쿠바, 니카라과, 건지(2007년 도입, Guernsey, 영국왕실령), 맨 섬(2006년 도입, Isle of Man, 영국왕실령), 저지(2007년 도입, Jersey, 영국왕실령)	6개 (2.6%)
17세	인도네시아(혼인시엔 나이 무관), 북한, 수단, 동티모르	4개 (1.7%)
18세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아, 아메리칸 사모아(American Samoa, 미국령), 안도라, 앙골라, 앙귈라(영국자치령),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아르헨티나(18~70세는 의무투표, 2012년에 16세로 하향하여 2013년부터 적용), 아루바(네덜란드령), 호주(의무투표), 아제르바이잔, 바나마, 방글라데시, 바바도스, 벨라루스, 벨기에(의무투표), 벨리즈(Belize), 베닌, 버뮤다(Bermuda, 영국자치령)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고용된 경우라면 16세부터 가능), 보츠나와, 브라질(18세~70세는 의무투표, 본인이 원하는 경우 16~17세 또는 70세 이상도 가능),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버마, 부룬디, 캄보디아, 캐나다, 카부 베르디(Cape Verde),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 영국자치령),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공화국(Chad), 칠레, 중국, 크리스마스 제도(Christmas Island, 호주 해외영토), 코코스 제도(Cocos (Keeling) Islands, 호주 해외영토), 콜롬비아, 코모로연방(Comoros),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쿡 제도(Cook Islands, 뉴질랜드제휴국가),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 크로아티아, 쿠라사오(Curacao, 네덜란드령),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공화국(의무투표, 혼인시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 에콰도르(18~65세 의무투표, 16세나 여타 선거권이 있는 자는 선택적), 이집트(의무투표),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 에리트레아(Eritrea), 에스토니아, 포클랜드 제도(Falkland Islands(Islas Malvinas), 영국자치령),	205개 (88.4%)

	페로 제도(Faroe Islands), 핀란드, 프랑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French Polynesia, 프랑스 해외영토-해외공동체), 가봉, 감비아 공화국, 그루지야, 독일, 가나, 지브롤터(Gibraltar, 영국자치령), 그리스(의무투표), 그린란드, 그레나다, 괌(미국령), 과테말라, 기니아, 기니비사우 공화국, 가이아나 공동 공화국, 홍콩(중국 특별행정구),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공화국, 코소보, 키르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소토왕국(Lesotho), 라베리아, 리히텐슈타인공국(Liechtenstein),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의무투표), 마카오(중국 특별행정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몰타공화국, 마샬제도공화국(Marshall Islands), 모리타니공화국(Mauritania), 모리셔스공화국(Mauritius), 멕시코, 미크로네시아연방(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미국 제휴국가), 몰도바, 모나코, 몽골리아, 몬테네그로공화국(Montenegro), 몬트세렛(Montserrat, 영국자치령),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델란드,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제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우에(Niue, 뉴질랜드 제휴 국가), 노퍼크(Norfolk Island, 호주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Northern Mariana Islands, 미국자치령), 노르웨이, 파키스탄, 팔라우(미국 제휴국가), 파나마(의무투표),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75세 이하는 의무투표), 페루(70세 이하는 의무투표), 필리핀, 핏케언제도(Pitcairn Islands, 영국자치령),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미국자치령),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생바르텔레미(Saint Barthelemy, 프랑스 해외영토-해외공동체),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나(Saint Helena Ascension and Tristan da Cunha, 영국자치령), 세인트키츠 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루시아(Saint Lucia), 세인트마틴(Saint Martin, 프랑스 해외영토-해외공동체), 생피에르앤드미틀롱(Saint Pierre and Miquelon, 프랑스 해외영토-해외공동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산마리노공화국(San Marino), 상투메프린시페(Sao Tome and Principe),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공화국(Seychelles), 시에라레온, 신트마르턴(Sint Maarten, 네덜란드령),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고용된 경우엔 16세부	

	터 가능),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수리남, 스와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의무투표),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 튀니지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공화국(Turkmenistan),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Turks and Caicos Islands, 영국자치령),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의무투표),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Vanuatu), 바레인(2011년에 18세로 하향, 2014년부터 적용), 베네주엘라, 베트남, 버진제도(Virgin Islands, 미국령), 윌리스푸투나(Wallis and Futuna, 프랑스 해외영토-해외공동체),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19세	한국	1개 (0.4%)
20세	아르메니아, 카메룬, 일본, 나우루(Nauru, 의무투표), 대만	5개 (2.2%)
21세	피지, 쿠웨이트, 레바논(모든 남성은 의무투표, 여성은 초등교육 이수 이상자만 가능), 말레이시아, 오만,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남성만 가능), 싱가포르(의무투표), 솔로몬제도, 토켈라우(Tokelau, 뉴질랜드령), 통가왕국	11개 (4.7%)
총		232개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등의 자료 재구성

위 정본입니다.

2013. 2. 15.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최 환 석 (인)

토론 2

“피선거권과 정당참여의 관점에서”

배준호(정의당 부대표)

진보정당과 청소년 정치 참여 - 정의당의 예비당원제 실험

1. 정의당의 정체성과 역할

- 진보정당 and 원내정당
-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역할과 현행법을 지켜야하는 역할이 공존 → 역할갈등이 발생

2. 진보정당에서의 청소년 당원 문제

- 통합진보당까지 청소년 당원을 인정하였으나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청소년의 당원 지위를 엄격하게 적용키로 결정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당원 자격을 부여한 현행 정당법과 당헌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입당을 중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당원 지위와 권한을 박탈
- 현재 정의당에서는 예비당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비당원에게는 당권이 부여되지 않아 정당법상 당원이라고 볼 수 없음
- 노동당과 녹색당에서는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같이 당권을 부여하고 있음

3. 예비당원제 운영상의 문제점

- 당의 역량상 청소년 부문에 많은 관심을 두기가 어려움
- 예비당원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함
-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예비당원들과 정당법을 지켜야하는 당직자들 사이에 마찰이 존재
- 지역 모임, 집회 현장 등에서 예비당원들을 차별하는 발언들이 자주 발생
- 예비당원들이 성인이 되면 활동하는 공간이 바뀌어 활동의 연속성이 약함

4. 제언

-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일치시키고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15세부터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정의당도 앞장설 것
- 예비당원제를 운영해보니, 청소년들을 정치적 주체로 존중하는 인식은 진보정당 내에서도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
-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정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것에 덧붙여 정당 내에서 당원들의 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토론 3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허영란(부산청소년YMCA연합회 회장)

주변에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을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자원입대를 한 청소년은요? 결혼한 청소년은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는 청소년도 본 적 있을 테고요. 하지만 정치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청소년은 본 적 없습니까? 아마 ‘선거’, ‘투표’, ‘참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청소년의 삶과 거리가 멀다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시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교육감 투표도 하지 못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야간자율학습과 같은 교육정책에 대해 불만을 느껴도 감정표출에 그칠 뿐 이를 바꾸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인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정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만과 불편에 대해서 국가에 어떤 식으로 토로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아무리 정치에 대한 무궁한 관심이 있고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마저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또한 주어져야 합니다. 외국에는 이미 청소년 지도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소년만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나라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재의 것입니다. 제도가 변화한다면, 다양한 생각과 시각을 가진 청소년이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해 사회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사회는 더 역동적이고 밝게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은 현 사회 제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무능합니다.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청소년을 정치로부터 묶어두고 있는 걸까요? 18세 참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 합니다. 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하다고. 그리고 아직 판단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

으며, 휩쓸리기가 쉽다고. 과연 그 이유들이 청소년을 정치활동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는 합당한 것일까요? 판단력이 흐리고 미숙하며 휩쓸리기 쉬운 청소년에게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발급하게 해주고, 혼인신고는 물론 운전면허증 취득, 아르바이트를 가능케 하고, 납세의 의무와 군복무의 의무를 지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청소년이 미숙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무를 지게하고, 권리를 부여합니다. '미숙함'은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수많은 권리를 주고, 의무를 지게 하면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만 배제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처사입니다. 만 18세에게도 참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배움의 주체인 교육당사자로서의 진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와 생각의 깊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숙하지 못한 또래의 청소년도 보지만, 그러한 어른도 많이 목격합니다. 누가 더 미숙하고 미숙하지 않고를 수치로 정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청소년을 미숙하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미숙함의 기준은 나이가 아닙니다. 어쩌면, 청소년은 틀에 박히지 않은 창의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내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참정에 있어서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현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부록 1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설문지

2016년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의견으로 국회에 '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하자는 법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과 실태에 관한 조사를 통한 의견을 모으고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연령 인하와 현재 선거를 비롯한 정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설문지에 응해주신 자료는 10월 29일에 있을 국회토론회에 쓰일 귀중한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

※질문에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1. 현재 당신의 나이는 몇 살 입니까?

① 14세 ② 15세 ③ 16세 ④ 17세 ⑤ 18세 ⑥ 19세

2. 선거연령 인하로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투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① 있다 ② 없다

3. 선거연령 인하가 이뤄진다면 몇 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 만약 99년 7월생이면 현재 생일이 지나서 만 17세입니다.)

① 만 14세 ② 만 15세 ③ 만 16세 ④ 만 17세 ⑤ 만 18세 ⑥ 만 19세 (현행유지)

4. 당신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예 ⇨ 5번 문항으로 가주세요.

② 아니오 ⇨ 6번 문항으로 가주세요.

5.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데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①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② 만 18세의 청소년은 군입대 가능, 경제활동 시 세금 납부, 결혼 가능, 운전 면허도 발급가능한데 선거권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관련 정책(교육정책, 복지정책 등)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이다.

④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 받는 이유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이다.
⑤ 사회적인 문제인 정치적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 7번 문항으로 가주세요.

6.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청소년 대부분은 미성숙하여 아직은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② 청소년은 정치보다는 학업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다.
③ 아직 선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나 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④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생겨도 많이 참가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⑤ 청소년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7번 문항으로 가주세요.

7. 만약 당신에게 선거권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시겠습니까?

① 정당 ② 입후보의 공약 ③ 입후보의 출신지역 ④ 입후보의 청소년 정책 유무여부

8. 청소년이 선거에 관심 갖기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②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더 급선무이다.
③ 학교생활과 학업만으로도 내 삶은 벅차다
④ 청소년이 참여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정치적 냉소주의)
⑤ 선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⑥ 나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9. 청소년에게 현재 제일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입시제도 및 교육정책 변화
②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인권문제 해결
③ 청소년 복지정책(무상급식, 학교 밖 청소년,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 증가
④ 학교 내 학생자치권 , 학생인권조례 보장
⑤ 대학등록금 인하
⑥ 기타 ( )

10. 만약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생긴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거라 생각하십니까?

①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더욱 많이 생겨날 것이다
②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과 미래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청소년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나 무관심이 사라져 정치에 관심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④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바뀔 우려가 있을 것이다.
⑤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사회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11.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선거권이란 직접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만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부여됩니다.)

① 피선거권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
② 피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

12.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

- 설문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부록 2 “18세 참정권”에 관한 지역청소년YMCA 입장문

○ 거창청소년YMCA 입장문

반갑습니다. 거창청소년YMCA연합회입니다.

우리 거창청소년YMCA연합회는 18세 참정권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마땅히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창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이미 만 18세의 청소년은 성인과 똑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단지 선거권만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청소년YMCA연합회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18세 참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행동결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만 18세 참정권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와 사회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으로써 행동 가능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18세 참정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 기자단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다방면으로 조명하는 기획기사 통해 청소년들의 알권리와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거창 지역에 청소년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많은 분들과 연대하여 18세 참정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은 중요한 역사적 현장에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미성숙한 인간이 아니라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함께 해 왔습니다. SNS 등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소통하고 있으며, 무엇이 그릇되고 참 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많은 선배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저 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가 변하고 많은 이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거창청소년YMCA연합회는 18세 참정권 운동을 그 시작으로 삼으려 합니다.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26
거창청소년YMCA연합회

○ **구미청소년YMCA 입장문**

열여덟은 충분합니다! “미성숙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혹시 OECD 35개국 중 19세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라는 저희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YMCA와 청소년YMCA회원들은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선거기간이 되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참여 없이 선출된 교육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이 결정하는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은 우리들의 삶에 무수한 영향을 끼칩니다.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18세라는 나이는 미숙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성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3.1만세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는 16살이었고,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된 4.19혁명의 김주열 열사도 17살이었습니다. 오히려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의 세우고 민주주의 바탕을 이뤄낸 이들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바로 열여섯! 열일곱의 소녀, 소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리고 미성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게, 미성숙한 존재가 되도록 강요받아 왔습니다. 스위스의 여성들은 1971년에서야 참정권을 획득했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부터 가능했던 대한민국 여성들에 비해 그들이 미성숙했던 것일까요? 미국의 흑인들이 완전한 참정권을 획득한 것은 1965년,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흑인들이 미성숙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백인위주의 시대, 남성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늘 변화하며 그에 맞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를 가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 온라인을 통해 같은 시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21세기 정보화 강국인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생물학적인 나이가 우리를 미성숙하게 하는 것이라면, 왜 국방의 의무를,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을 열여덟의 나이에 가능하게 한 것인가요?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은 왜 18세에 발급해주나요? 이 같은 의무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놓고 왜 유독 투표만 19세가 되어야 가능한 것인가요?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치적 행위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그들을 대표할 사람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소리 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때입니다. YMCA와 구미청소년YMCA회원들은 청소년들의 권리가 인정 될 때까지, 모든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부여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요구는 마지막 목표가 아닙니다. 그 첫 발걸음입니다!

2016. 10. 23
구미청소년YMCA연합회

○ 김해청소년YMCA 입장문

김해지역은 토론회를 통해 18세 참정권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토론회 결과 찬성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반대입장에 도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해지역 청소년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18세 참정권이 주어 졌을 때 의 장단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찬성측 의견
1. 정치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증가 할 것입니다.
2. 청소년과 어른은 평등해야한다.
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 할 것입니다.
4. 국회의원이 폭넓은 법을 만들 것이다.
5. 교육부등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6. 청소년들은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7.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8. 청소년들이 원하는 쪽으로 법률이 재정되거나 보완 될 것이다.

9. 충분한 교육을 거친 후에 실시한다면 정치참여도와 투표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측 의견
1. 올바른 선택을 하기엔 아직 어리다.
2. 정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3. 청소년들의 참여률이 저조할수있다.
4. 학생들이 투표를 해도 바뀌기 힘들 것이다.
5. 비밀투표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6. 청소년들은 쉽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있다.

저희 김해지역 청소년들의 입장은 충분한 교육을 거친 18세 참정권이야말로 청소년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줄이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016. 10. 25
김해청소년YMCA연합회

○ 마산청소년YMCA 입장문

저희 청소년YMCA는 그동안 청소년사회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1년여동안 청소년들의 자기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해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8세 참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현재 참정권이 주어지는 연령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자 할 때,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투표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주변여론에 휩쓸려 인기투표가 행해 질 수 있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낮다.' 등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때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두려움과 무서움을 내려두고, 함께 거리로 나왔던 '민주화 운동' 중심에는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또한 2002년 효순·미선이를 위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반대를 위해,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해 청소년들은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더 이상 아깝게 흘려 내보낼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민주시민으로서 떳떳이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교육, 사회, 정치 등 보다 사회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대변해주는 어른을 발견하는 실낱같은 희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 18세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를 부탁드리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함께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23
마산청소년YMCA연합회

○ 부산청소년YMCA 입장문

18세 참정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직접 영향을 받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참여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공무원 응시, 자원입대, 운전면허 취득, 결혼 등의 사회활동은 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셋째, 234개국 중 92%가 만 19세보다 참정권의 연령이 낮다. 즉, 청소년의 정치활동에 있어서 개방적이다. 청소년 참정권이 잘 시행되고 있는 예로, 홍콩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3세 네이선 로를 들 수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참정에 대한 권리가 잘 주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시각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들이 참정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국민은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투표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와 생각의 깊이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나이가 어려서 미

숙하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한다면,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영향이 높아져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18세 참정권이 주어졌을 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정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기관을 이용해 실전 교육 등을 거친다면 참정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다.

2016. 10. 23
부산청소년YMCA연합회

○ 서울지역청소년YMCA 입장문

1. 18세 청소년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나이가 어려 판단하지 못한다면, 병역의무, 주민등록증 발급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2. 청소년 참정권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청소년 정책에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서울지역 청소년YMCA는 청소년 참정권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16. 10. 22
서울지역청소년YMCA연합회

○ 성남청소년YMCA 입장문

이미 많은 나라에서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지만 OECD 국가 34개국 중 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투표권을 만 18세에게 쥐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핑계거리로 “만 18세는 아직 어리다, 생각하기에 이르다, 어린 애들은 몰라도 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 19세가 넘은 성인들은 모두 올바른 생각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청년 투표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어른들의 “몰라도 돼” 라는 교육 덕에 정말 사회에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청년의 사회참여와 투표율이 낮아지면 모든 연령대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는 힘이 듭니다.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았더라도 입후보들은 시장과 양로원에만 선거운동을 하러 다녔을까요? 아마 대학로와 로데오 거리등 좀 더 많은 곳에서 선거운동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 18세 참정권은 좀 더 높은 사회참여율을 불러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 18세가 된다면 남자는 병역의 의무도 질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약혼은 물론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주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 18세를 이미 어른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사회에는 녹아들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투표권만이 없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리다, 는 정말 일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불과 한 살 차이인 만 19세가 된다 한들 갑자기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투표권이 만 18세에게 주어진다면 고등학교에서 교육 하는 방식 또한 달라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고3 학생들이 투표를 해야 할 텐데 그에 맞추어 교육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점점 젊은 연령대의 사회 참여율을 늘려가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더 적어보자면 청소년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마저도 청소년들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가 없단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육은 청소년들 본인이 받는 것이지 어른들이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른들이 정해준 법만 따르는 것은 한국 청소년의 행복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 정치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라 하십니다. 청소년들은 무조건 성숙 하지 못 하고 어른들은 세월에 의해 무조건 성숙 할 것이란 고정관념 아닐까요?

오히려 청소년들의 불안정함이 새로운 사상과 정치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청소년들도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사회의 일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이 불만을 가진 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바꾸고 싶다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생각만큼 만 18세는 그리 어리고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위의 이유들로 만 18세 투표권은 청소년이 받아야할 마땅한 권리이며 의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23
성남청소년YMCA연합회

○ 속초청소년YMCA 입장문

안녕하세요. 속초청소년YMCA연합회 입니다.
저희는 속초청소년YMCA는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운동에 적극 동의합니다.

18세 참정권 청소년에게 허하라!!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허가하는 18세 행정제도에는 주민등록 발급(17세), 운전면허(18세), 공무원 임용(18세), 혼인적령(남 18세, 여 16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에서 대부분의 권리가 부여되는 18세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어른들은 흔히 청소년들을 보고 판단력이 부족해서?나이가어려서?미성숙해서?라고 얘기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나이와 신분이 모든 의식마저 지배하려는 차별의식 아닐까요?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대한민국의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온 것은 늘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현재 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만 19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OECD 선진국답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청소년의 18세 참정권을 줘야 합니다.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선거권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헌법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의 규정을 통해 선거권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18세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키고 있으나,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다양한 정책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하며 청소년들에 의한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과 사회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청소년YMCA는 18세 참정권을 정당하게 요구하며 '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 운동본부'의 활동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응원합니다. 저희 속초청소년YMCA회원 및 대표자회도 18세 참정권이 실현 되어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살만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6. 10. 28
속초청소년YMCA연합회

○ 수원청소년YMCA 입장문

수원청소년YMCA연합회는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현재 만 18세 청소년들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이 4가지인 4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만 19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OECD국가에서 대한민국은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9시 등교를 생각해 봅시다. 9시 등교를 하게 되고나서부터 우리는 조금 더 부모님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저녁까지 공부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약 1시간정도 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다고 생각합니다.
몇몇은 만 18세 참정권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이 '청소년은 아직 미숙하다'와 '청소년이 과연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청소년이 과연 정치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입니다. 이런 이유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은 오히려 성인들 보다 더 많은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 중에서도 3.1운동이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청년 및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역사에서도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청소년은 학교라는 곳에서 작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 전교 회장선거 등 이미 많은 투표를 하고 저 학생은 왜 뽑아야 하는지 왜 뽑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을 하고 뽑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미숙해서, 청소년이 제대로 투표 할 수 있을까라는 만 18세에게 참정권에 대해 반

대한다는 이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과연 정치에 관심을 가질까? 라는 의문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문과, 이과는 선택과목이 다릅니다. 이과는 미적1,미적2를 배우고 문과는 미적1만 배우죠. 그래서 문과생들은 미적2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능력시험 또는 학교시험에 문과도 미적2를 시험에 내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문과생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미적1 뿐만 아니라 미적2에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 관심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투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인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와 제 2조를 보면,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와 제 2조를 해석해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청소년 또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이고 국가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청소년이 투표권을 얻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더 발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청소년YMCA회원들은 18세 참정권 실현되는 날까지 노력 할 것입니다.

2016. 10. 23
수원청소년YMCA연합회

○ 아산청소년YMCA 입장문

아산YMCA는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직접 영향을 받는 교육정책은 청소년이 택하지 않고 어른들이 택하고 있어 교육제도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8세 참정권이 실현되면 그 교육제도를 선택 할 권리가 있어 교육제도를 직접 청소년이 선택하고 교육을 받음으로서 청소년이 살기 좋아지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 18세가 되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등을 가지는데 정치만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차별받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가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선거연령 만19세이다. 이 이유는 청소년이 미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미성숙의 합리적인 기준도 없고, 미성숙이 성숙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새로운 의견이 나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YMCA에서는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사회의 시각이 더 다양해 질 것 이라 생각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제도 및 미래의 제도 등에 선택의 폭이 넓어 질 것을 예상하며 18세 참정권 실현을 동의합니다.

2016. 10. 25
아산청소년YMCA연합회

○ 안동청소년YMCA 입장문

우리 안동청소년YMCA는 34년 동안 안동지역에서 청소년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캠페인때도 교육감 선거 참정권에 대해 외쳤으며 18세 참정권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18세라는 나이는 미숙한나이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청소년은 정치적 지식이나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물론 성숙하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본질을 흐트리는 청소년들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이며 청소년도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성인들과 다를것이 없을만큼 정치에 관한 관심이 많고 충분한 지식과 이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18세 참정권이 이뤄진다면 청소년들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것이며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생길것이고 자연스럽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정치적 무관심도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도 어엿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합니다. 학생의 눈도 우리사회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YMCA는 차근차근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인의 눈과 학생의 눈으로, 두 눈으로 뜰 날을 위해서.

2016. 10. 25
안동청소년YMCA연합회

○ 안산청소년YMCA 입장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산청소년YMCA연합회입니다. 저희는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18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청소년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해 접하면서 개인의 견해도 갖고 있고 가끔은 이러한 견해들을 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책임을, 권리는 의무를 동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 청소년 연령인 18세에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선택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일 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들의 바램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만큼 이 사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우리를 대변해준다는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교복을 벗고 투표할 권리를 가질 때면 우리 역시 더는 당사자가 아닌 대신하는 입장일 뿐이겠지요. 선거 때만 되면 젊은 세대들의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거나 비판하면서 평소에 정치를 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떠나 갑자기 생긴 권리가 낯설게만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국.영.수 입시위주의 지식확충만을 강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를 바라보고 참여와 선택하게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나요?

정치참여라는 것을 청소년과 떨어뜨려 놓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의무에 비해 권리를 주지 않는 민주적이지 못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냥 어리거나 판단력이 모자른 세대라고 말하기엔 과거 10대로부터 시작된 여러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와 지금의 우리는 다르다란 말로 이야기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0대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사실이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잠재하고 있는 역량을 인정하고 가르치며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선거권만 가지고 정치를 갑자기 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선거권을 갖게 된다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성장할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과 사회적 요구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사건을 겪은 우리는 사건의 이유 중 하나로 알려진 '가만히 있으라' 란 침묵의 강요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원인과 진상규명에 대해 당사자 세대로서 요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부터 교실문제 등 지금까지의 크고 작은 현황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지도 않고 답답하고 부당하게 흘러온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가 가능한 세대라면 과연 어떨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권으로 표현되는 국민의 힘이라면 최소한의 참여와 목소리를 들어주고 정치인들도 어른들도 진정 우리의 생각과 의견도 반영하려하지 않을까요? 교복입은 우리들도 국민의 힘을 갖고 싶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 이웃과 친구를 생각하는 우리 또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8세 참정권을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2016. 10. 25
안산청소년YMCA연합회

○ 여수청소년YMCA 입장문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사회참여의 한 부분인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18세 참정권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하는 데 부적합하다며 외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청소년YMCA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18세 참정권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청소년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직접 투표를 해야합니다. 청소년이 아무리 크고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 한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주려는 정치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한국방송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에서 50대가 65%, 60대 이상이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5,60대를 겨냥한 공약들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40대가 약 53%, 2,30대가 약49%의 투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대 총선에 비하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러한 결과가 뜻하는 것은 2,30대, 40대를 위한 공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며 정치인식 또한 더 높

아진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진다면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들이 보다 더 증가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어리다고 정치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회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나 정책에 대해 무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미성숙해서 타인의 영향을 받아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초등교육부터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성과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학습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적인 청소년, 우리들에게 참정권을 주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정책과 스스로의 사회참여가 더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세 참정권을 위해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우리의 입장을 다시 강조합니다.

2016. 10. 25
여수청소년YMCA연합회

○ 울산청소년YMCA 입장문

대한민국 청소년 나이 만 18세가 넘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양합니다. 결혼, 군대입영, 혼인, 9급 공무원 지원 등,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군가의 도움없이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참정권만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울산청소년YMCA는 이렇게 말합니다.

1. 청소년에게 18세 참정권이 필요합니다. 현재 참정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19세이며, 이하로 두지 않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사회적 지식이 얕으며 판단력 또한 부족하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기준일까요?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사회결정에 관해 관여 할 수 있는 기회,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 합니다. 현 교육의 해당인인 청소년들이 입시제도와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거주하는 동네와, 매일 마주하는 친구들, 학교, 지역권, 대한민국은 우리의 것이며,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써 과거로 돌아가, 민주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어 왔던 그들을 기억하시나요? 3·1독립운동,4·19혁명 등. 우리들은 항상 나 자신과 후배들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펼쳐왔습니다.

3. 울산청소년YMCA는 대한민국 청소년이 하나의 국민으로 인정받는 그 날 까지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하겠습니다. 그저 선거권 연령인하의 주제 뿐 만 아니라, 청소년이 사회를 접하고 함께하며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까지 이를 수 있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YMCA에서 계속 소리쳐 주장하겠습니다.

2016. 10. 23
울산청소년YMCA연합회

○ 원주청소년YMCA 입장문

안녕하세요. 원주청소년YMCA입니다.

원주청소년YMCA에서 18세 참정권에 대하여 논의해본 결과 원주 청소년YMCA는 18세 참정권을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저 OECD를 비롯한 세계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8세 참정권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주 청소년YMCA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미성숙하지 않다' 고 생각하지 않으며 19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올바른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8세가 되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노동의 의무 등을 가지는데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이 정치만 참여 할 수 없다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청소년이 직접 영향을 받는 교육정책 청소년이 택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18세 참정권이 실현된다면 교육제도를 선택 할 권리가 있어 교육제도를 직접 청소년이 선택하

고 교육을 받음으로서 청소년이 살기 좋아지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18세 참정권에 대해여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2016. 10. 25
원주청소년YMCA연합회

○ 천안청소년YMCA 입장문

우리 천안YMCA는 참정권을 18세로 인하하는 것에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2004년에 선거권이 만 19세로 인하된 후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정치의식 연령수준은 낮아지는데 선거권은 여전히 만 19세입니다. 청소년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만큼 참정권 인하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어른들은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하여 선거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미성숙하지 않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병역, 납세, 노동 등의 의무가 있고 결혼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미 청소년이 성숙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참정권만 제외되어있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한 참정권은 청소년도 시민으로써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미 세계 약 150개의 나라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우리나라도 동참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참정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천안 청소년 YMCA 일동은 18세 참정권에 대해 동의합니다.

2016. 10. 23
천안청소년YMCA연합회

○ 춘천청소년YMCA 입장문

안녕하세요. 춘천YMCA입니다.
저희는 현재 다른 지역 YMCA와 함께 18세 참정권이 실현되기 위한 캠페인 및 설문조사와 서명운동 등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18세참정권을 위하여 운동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선거의 권리가 주어지기 위함입니다.

18세 참정권이 실현됨으로 인하여 편한 것 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20대가 됐을 때 참정권에 대해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모르고 어른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건 올바른 관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4대 원칙은 비밀, 자유, 보통, 평등선거입니다. 이 중에서 보통선거는 '~'를 뜻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미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보통선거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18세 참정권운동을 실현하려는 이유는 단지 종이에 도장을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들이 이미 18세참정권을 실현하고 있고 동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법안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선거의 권리가 없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법안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당당하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우리들을 위한 법안들이 나오게 되고 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미래가 있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주인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인과 동등한 사회적 위치에서 납세•병역의 의무, 결혼가능권리가 주어지는데 오직 선거에만 제한이 되는 것이 정말 옳은 걸까요?

2016. 10. 26
춘천청소년YMCA연합회

○ 파주청소년YMCA 입장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주YMCA청소년연합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중 만 18세가 넘으면 결혼, 취업, 군대 입영, 운전면허증 취득, 9급 공무원 지원, 모든 상영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은 19세가 넘어서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참정권을 누리기 위해, 파주YMCA청소년 및 회원,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첫째, 청소년인터넷방송국을 통해 18세 참정권을 알리겠습니다.

청소년이 매주, 매일하는 방송을 통해 18세 참정권과 왜 청소년이 참정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리고 소통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및 기존의 유권자가 쉽게 볼 수 있게 포스터를 제작, 게시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18세 참정권에 대해 쉽게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 게시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18세 참정권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18세 참정권을 아는 것만 아니라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참정권에 대해서 교육하고 토론회를 개최, 진행하겠습니다.
칼은 위험하지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로운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요리사가 칼을 사용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조각가가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청소년이 참정권의 의미를 알고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다섯째,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에게 18세 참정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시민뿐만 아니라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청소년이 원하는 것과 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줘야하는지 알리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만 18세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키고 있으나,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사회적경험이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미성숙하다는 이유에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사회적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며, 많은 경험을 하면,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도 자신의 학습권이나 입시제도, 인권과 권리를 논하고 결정하며 사회적문제에 대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파주YMCA청소년, 회원 및 지도자들은 노력할 것 입니다.

2016. 10. 23
파주청소년YMCA연합회